

공 고

수원시 장안구 공고 제 2013 - 220 호

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를 지정하였기 공고합니다.

2013. 06. 04.

장 안 구 청 장

1. 도로위치 : 별첨 현황도와 같음
2. 도로구간 : 시점 - 파장동 348번지, 종점 - 파장동 348번지
3. 도로길이 : 5.00 m
4. 도 로 폭 : 3.0 m
5. 도로면적 : 0.8m² (도로후퇴폭 약 0 ~ 20cm)
6. 지정동기 :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351번지상의 건축물 사용승인
7. 지정근거 :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
8. 편입토지

(단위 : m²)

위 치	지 번	지 목	공부면적	편입면적	제외면적	소유자	비 고
파장동	348대	대	488.0	0.8	-	최선영	
합 계			488.0	0.8		최선영	

9. 기타사항

위 도로의 면적, 길이, 폭은 개략치 이므로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관련서류는 장안구청 건축과(031-228-5456)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소관 부서	장안구 건축과	담당자 직·성명	건축팀장 배희섭	전화 번호	228-5456
----------	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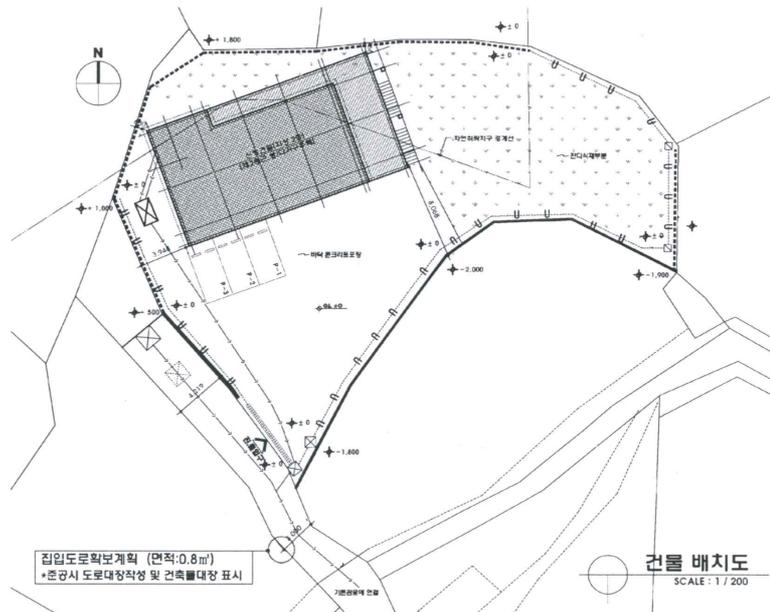
위치도 및 현황도

•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.



위치도

축척 <임의>



현황도

축척 [] 1/600, [] 1/1,200